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2017고합364-1(분리)]



【전문】

【피고인】 피고인

【검 사】이원석, 한웅재(각 기소, 공판), 한동훈, 김창진, 고형곤, 전준철, 김민형, 이만흠, 배문기, 최임열, 유경필, 손찬오, 용성진, 김종우, 이동균, 박건욱, 허준, 강상묵, 김재화, 어인성, 김주석, 조성윤, 이주용, 김태겸, 유지연, 강일민, 정윤식(각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현권 외 4인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내지 34 기재 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유]

1

[이유]

]

【이유】

]

[이유]

1

[이유]

1

[이유]

]

【이유】

1

[이유]

1

[이유]

1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